

●산림청공고 제2024-180호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25일

산림청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 1. 공 고 일: 2024년 4월 25일
- 2. 대 상 지: 울산광역시 등 11개 시·도 내 5,236필지, 57,044,856㎡

(단위: 필지, m²)

구분	지정해제			신규지정		
	필지	지목	면적	필지	지목	면적
계	4,944		35,803,645	292	-	21,241,211
울산	27	임야, 대지	216,477	-	-	-
세종	48	임야, 전, 도로	1,550,483	-	-	-
경기	217	임야, 대지, 잡종지 등	1,031,152	-	-	-
강원	406	임야, 대지, 전 등	3,588,518	102	임야	9,147,040
충북	242	임야, 대지, 전 등	1,456,884	25	임야	704,900
충남	32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3,891,854	-	-	-
전북	376	임야, 잡종지, 전 등	2,839,601	83	임야	7,686,009
전남	1,80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12,843,769	1	임야	299,137
경북	764	임야, 대지, 잡종지 등	4,160,574	73	임야	2,513,026
경남	708	임야, 대지, 잡종지 등	4,162,202	8	임야	891,099
제주	28	임야	62,131	-	-	-

- 3. 세부내역: 도면 및 세부 필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열람 가능
- 4. 의견제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지정해제 대상지 관련 의견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로, 신규지정 대상지 관련 의견은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아래 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

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의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측량도면 등

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의 공고와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298) 또는 아래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및 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해제 대상지 문의 기관		신규지정 대상지 문의 기관	
시·도	전화번호	지방산림청(지역)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052-229-3356	북부 (인제)	033-738-6273
세종특별자치시	044-300-4422		
경기도	031-8030-3545	동부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양양, 정선, 태백, 평창)	033-640-8611
강원특별자치도	033-249-3141		
충청북도	043-220-3784	남부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영주, 예천)	054-850-7745
충청남도	041-635-4504		
전북특별자치도	063-280-3122	중부 (영동, 괴산, 단양)	041-850-4043
전라남도	061-286-7543		
경상북도	054-880-3605	서부 (남원, 무주, 장수, 구례, 함양, 거창)	063-620-4652
경상남도	055-211-6893		
제주특별자치도	064-710-6773		